

## 1964년 공민권법 제6편(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에서 규정된 권리

### D.C. 교통국(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공민권법 제6편 관련 정책

D.C. 교통국은 1964년 공민권법 제 6편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그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별, 나이 또는 장애로 인해 D.C. 교통국(DDOT)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데 배제되거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혜택을 받는 것이 거부되거나 이와 관련한 어떤 형태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민권법 제6편 규정이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차별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한 날 또는 의심되는 차별 행위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D.C. 교통국의 시민 권리 프로그램과 항의를 제기하는 절차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시려면 D.C. 교통국의 시민 권리 사무국 (Office of Civil Rights)에 다음의 연락처나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ffice of Civil Rights

55 M Street SE, 3rd Floor

Washington, DC 20003

전화: (202) 671-2700

팩스: 202-645-0366

TTY 711

이메일: [ddot.titlevi@dc.gov](mailto:ddot.titlevi@dc.gov)

<http://ddot.dc.gov/service/civil-rights-program-and-services>

항의서는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의 시민 권리 사무국(Office of Civil Rights)에 다음의 주소로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Attention: Title VI Program Coordinator, East Building, 5th Floor-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